

공정거래위원회 주요 심결 사례

2000. 11. 14.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현대금속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구사0646)	주식회사 현대금속은 1996. 5월부터 「튜블라형 레바록」을 생산·판매하면서, 기술표준원에서 레바형 도어록에 대한 KS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이 불가능하고 「튜블라형 레바록」에 대해 KS인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 제품의 포장용기에 KS인증 표시를 사용하였으며, 고객들에게 동 제품이 KS인증품이라 설명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7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2000. 11. 15.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티피케이인터넷내셔날(주) 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2000유거0069)	티피케이인터넷내셔날(주)는 자신의 가맹계약자와 체결한 도미노피자판매체인점가맹계약서 제21조에 의하여 가맹점 소재지역 이외에서는 배달판매 및 판촉행위를 금지하였으며, 1999. 10. 9. 자신의 가맹계약자인 도미노피자사당점과 도미노피자 방배점이 각각 자신의 배달구역을 넘어 다른 지역에 배달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서 제12조제2항에 근거하여 서면으로 경고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위반	◎ 구속조건부거래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맹점계약서 해당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토록 하고,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가맹계약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2000. 11. 18.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뉴코아백화점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 (2000유거1079)	주식회사 뉴코아백화점은 2000. 7. 14.부터 7. 24.까지 자신의 본관 5층 가구매장에서 30만원 이상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경품류의 가액한도를 2,313원 초과하여 액면가격 3만원의 상품권과 구입가격 1,850원의 손수건 1매를 제공하였고, 50만원 이상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가액한도를 4,750원 초과하여 액면가격 5만원인 상품권과 구입가격 3,800원인 타올 1세트를 제공하였으며, 100만원 이상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가액한도를 9,750원 초과하여 액	◎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경품을 제공한 가구매장의 출입구에 전지크기로 부착하여 공표토록 함

심·결·사·례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면가격 10만원인 상품권과 구입가격 7,800원인 면패드 1매를 제공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 위반	

2000. 11. 20.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산청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0883)	주식회사 산청은 “월간물가자료” 1998. 10월호부터 2000. 8월호까지와 “월간유통물가” 1999. 1월호부터 2000. 8월호까지에 사실과 다르게 “ISO 9002 인증업체, KS표시허가업체 ⑩”라는 제목하에 자신이 생산하는 제품을 나열·기재하여 그 아래에 크고 뚜렷한 글씨로 자신의 상호를 게재하여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구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6호 및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월간물가자료에 1개면의 2분의 1 이상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제일휴먼테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광고0985)	제일휴먼테크는 2000. 7. 10.부터 8. 16.까지 중앙일보 등 5개 일간지에 자신이 판매하는 다이어트상품인 “제일건강 다이어트프로그램”에 대한 광고를 하면서 객관적 근거도 없이 “내 몸에 맞는 다이어트로 10kg 감량 빠르고, 쉽게”라고 표현하고, 광고 좌측상단에 “주식회사 제일건강”으로 상호를 표시하고 본사 고객상담실을 안내하면서 “(주. 제일건강 다이어트사업부)”로 표기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함으로써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 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 × 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

2000. 11. 21.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아티누스 및 한빛문고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2000구사0686)	한빛문고의 대표와 (주)아티누스의 대구지사장은 2000. 2월초 북플러스 사무실에서 영업비용을 줄이고 과도한 거래처 확보경쟁을 줄일 목적으로 대구지역의 영업구역을 분할, 각자의 구역 도서대여점에만 도서를 공급하기로 합의하여 대구지역 도서대여점 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제4호 위반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들의 모든 거래처에 각각 서면으로 통지토록 함
(주)코리아나화장품의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등에 대한 건 (2000경촉0786, 2000경촉0839)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은 대리점들과 거래함에 있어서 특약점거래약정서 제15조에 ‘거래약정서에 규정된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 또는 불이행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사실상 대리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판매구역 내에	◎ 구속조건부거래행위 및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조항을 삭제 또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p>서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강제하였고, '비표제거행위, 타 지역으로 제품 이동 등은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영업의 유형이고 이에 해당하는 특약점에는 제품공급 중단, 경위서 제출, 해약 후 교체'라는 내용의 "시가관리" 보고서를 판매대리점에 시달하였으며, 1998. 4. 3. 강원도 원주의 신원주특약점과 화장품공급계약을 맺고 거래를 시작했으나 자신이 신원주특약점에 공급한 제품이 강원도 원주에 위치한 화장품 전문점인 제일화장품을 통해 신원주특약점 및 제일화장품의 판매구역 밖인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성재종합이라는 화장품 도매점에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2000. 3. 13. 신원주특약점과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 함으로써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29조 위반 또한, 특약점거래약정서 제15조에 계약해제사유를 포괄적으로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둠으로써 약관법 제17조 위반</p>	<p>는 수정토록 하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자신의 모든 대리점에 서면으로 통지토록 하고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

2000. 11. 30. 심결

사건명	위반내용	시정조치
(주)장안온천리조트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2000소기0783)	<p>주식회사 장안온천리조트는 동 리조트를 조성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자신의 용출수가 온천의 기준에 적합하다거나 각종 질환치료에 효험이 있다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나 과학적인 임상실험결과도 없이 "식염온천수는 혈액순환촉진, 신경통, 가려움증, 무좀 등에 효험이 있음은 물론 미네랄이 일반 온천수에 비해 2배 이상 함유되어 있어 피부노화방지, 세포재생작용으로 건강한 피부를 유지시켜 준다"고 표현하였고, 공식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금속과 무기광물질이 없는 물로서 지하 9백m에서 끌어올린 천연암반 이온수"라고 표현하였으며, 허가만 받았을 뿐 시공상태가 아닌 시설에 대해 "(주)장안온천리조트는 대규모 온천리조트 조성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화성군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1, 2, 3단지별로 대욕장, 여관, 근린생활, 편의시설 등을 갖춘 종합리조트 시설들을 착공, 시공중에 있다"라고 표현하여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광고행위를 함으로써 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p>	<p>◎부당한 광고행위를 하지 말라는 시정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이미 광고한 1개 중앙일간지 전판에 3단×10cm의 크기로 게재하여 공표토록 함</p>